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 금액 인상 및 관련 소모품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분류를 반영하는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9. 7. 16. 시행)되었으나, 유학생 등의 경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유예하였으나, 종료일이 도래하여 유학생 등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26조)
- 나.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다리 의지의 5개 소모품에 대한 급여 실시(안 제26조, 별표 7 등)

다. 일부 장애인보조기기 명칭 등 변경(안 별표 7)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
자격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모품”을 “별표 7 제2호자목에 따른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61조의2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는 경우

별표 7 제1호 나목 전단, 다목 전단 및 자목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각각 “전·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대상인 보조기기 소모품은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 2) 다리 의지의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해당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며,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지급

별표 7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930,000	4
		기능형	1,53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020,000	4
		기능형	1,530,000	4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40,000	4
		기능형	1,490,000	4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 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3
		기능형	1,640,000	3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 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650,000	3
		기능형	980,000	3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 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20,000	3
		기능형	830,000	3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000	1
		기능형	610,000	2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 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50,000	1

별표 7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반 의지 (Trans - pelvic prosthese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 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 우 사용		2,26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 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 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 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2,260,000	4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50,000	3
		실리콘형	2,960,000	5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30,000	3
		실리콘형	2,610,000	5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380,000	3
		실리콘형	2,230,000	3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680,000	2
		실리콘형	1,440,000	3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80,000	1
		실리콘형	790,000	2

별표 7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팔꿈치 - 손목 - 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	일반형	240,000	3

	절 고정 목적)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 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각도 조절형	260,000	3
3) 손목 - 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90,000	3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50,000	3

별표 7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70,000	3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60,000	3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되어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	자켓형 (Cervical Jacket)	380,000	3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	150,000	3

		ype)		
3) 허리 - 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William type)	190,000	3
4) 등 - 허리 - 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등 · 허리 또는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 (Jacket)	400,000	3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코르셋 (Corset)	80,000	3

별표 7 제2호마목의 유형란 중 “pelvic band”를 “Pelvic orthoses”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엉덩 -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540,000	3
		양쪽	790,000	3
2)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410,000	3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190,000	3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레녹스힐 (Lenox-Hill)	160,000	3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인대 손상용	80,000	3
4) 발목 - 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뺨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체중 부하식	370,000	3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	일체형 (플라스틱)	120,000	3
		90도 고정형 (플라스틱)	310,000	3
		90도 고정형 (금속형)	300,000	3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데 사용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360,000	3
		크렌자크식 (금속형)	350,000	3

별표 7 제2호아목4)의 유형란 중 “artificial eye”를 “Ocular prosthesis”

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유형란 중 “체외용 인공후두”를 “개인용 음성 증폭기”로 하며, 같은 목 14)의 유형란 중 “자세보조용구-앉기형(adaptive seating device)”을 “자세보조용구(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로 하고, 같은 목 18)의 유형란 중 “보행보조차”를 “보행차”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란을 1)로 하고, 같은 목에 2)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 연결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3) 종아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 연결 부품	일반형	416,000	—
		실리콘형	527,000	—
4)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646,000	—
5)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435,000	—
6)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517,000	—

별표 9 제1호 중 “산업연수(D-3)”를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가목 단서 및 제5호, 같은 쪽 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각각 “전·후방보행차”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자”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③ 처방 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머리 및 목 지지대
	[] 이동식전동리프트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다리 및 발 지지대
	[] 맞춤형 교정신발류	[] 전방보행차	[] 후방보행차
	[] 의지·보조기	유형:	[] 우 [] 좌
	[] 다리 의지 소모품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 일반형/[] 실리콘형)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 일반형/[] 실리콘형)	

④ 검사결과	자세보조용구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등급, 좌 ()등급	
		큰동작기능 분류체계 (GMFCS)		
		영상의학 검사	코브각도 (Cobb's angle) ()도	
			척추앞굽음 ()도	
			척추뒤굽음 ()도	
		엉덩관절이동지수 (hip migration index) (%)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수정바델지수(MBI) 검사	총 점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등급, 좌 ()등급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 의 자격번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척수손상	[]완전	[]불완전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척수손상	[]완전	[]불완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품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③ 보조기기	의지·보조기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다리 의지 소모품	[]작업치료사		업소관리번호				
	맞춤형교정용신발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15세 이하 양측)	착용 측	우	[]좌	[]양쪽	보청기 형태		
평균순음청력역치 * 6분법 [(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보청기 착용 전 (처방전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실시)			
			우	좌	우	좌		
말소리 명료도(%)			%	%	%	%		
④ 검수 확인	(보조기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생략)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기기[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호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② ----- ----- ----- ----- ----- ----- ----- ----- ----- ----- ----- ----- ----- ----- ----- ----- <u>별표 7 제2호자목에 따른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u> ----- ----- ----- <u>전·후방보호차</u> ----- -----

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
3호서식을 첨부하지 않는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생략)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
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 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
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
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
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
자나 피부양자가 제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
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⑤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	--